거창군
Geochang County
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.

공 보

제855호 2022. 4. 20.(수)

거창푸른거창

선결	기관의 장

고 시

거창군 고시 제2022-44호 거창군관리계획(문화시설) 결정(경미한 변경),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····· 2

거창군 고시 제2022-47호 거창군계획시설(교통시설:소로1-75, 76호선, 중로3-64호선)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(변경) 인가 고시 ····· 4

거창군 고시 제2022-49호 도로명주소 고시 ····· 6

공 고

거창군 공고 제2022-651호 행안부기획정비를 위한 거창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····· 7

거창군 공고 제2022-673호 거창군 청소년수련시설 임시휴관 공고 ····· 16

회 람									

발 행 : 거창군 편 집 : 기획예산담당관 (055-940-3043, 행정 3043)

※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(http://www.geochang.go.kr)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

◉거창군 고시 제2022-44호

거창군관리계획(문화시설) 결정(경미한 변경), 지형도면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

『거창문화센터 리모델링사업』에 따른 거창군계획시설(문화시설) 사업에 대하여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,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인가 고시하고, 실시계획에 반영된 경미한 군관리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「토지이용규제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거창군관리계획(문화시설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

2022년 4월 14일

거 창 군 수

1. 거창군계획시설 결정(변경) 조서(경미한 사항)

가. 문화시설

1) 문화시설 결정(경미한 변경) 조서

구분	도면표시번호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 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변경	1	문화시설	문화예술회관 및 박물관	거창읍 김천리 216-5번지 일원	15,592	증)331	15,923	경상남도 고시 제1997-114호 (1997.04.29)	

■ 문화시설 변경사유서

도면표기번호	시설명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1	문화시설	▪ 면적산정 착오 정정 및 등록전환측량 결과 반영 - 지번: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216-5번지 일원 - 면적: 15,592㎡→15,923㎡(증331㎡)	• 편입토지 면적산정 착오 정정 - 지번: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216-5번지 일원 - 면적: 15,592㎡ → 15,928㎡(증 336㎡) • 등록전환측량 성과 결과 반영 - 지번: 산8-43 → 216-45 등록전환 - 면적: 16㎡ → 11㎡(감 5㎡)

2. 거창군계획시설(문화시설)사업 실시계획인가

가. 사업시행지의 위치: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216-5번지 일원
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○ 종 류 : 군계획시설(문화시설)사업

○ 명 칭 : 거창문화센터 리모델링사업

다. 사업규모 : 15,923㎡

○ 당초 건축연면적 : 5,829,57㎡

○ 변경 건축연면적 : 6,048.61㎡ (증 219.04㎡)

라.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

○ 주 소 :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

○ 성 명 : 거창군수(문화관광과장)

마. 사업기간 : 실시계획인가일 ~ 2022. 12. 31.

바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: 붙임참조

3. 관계도서 : 열람장소 비치[거창군청 도시건축과(☎055-940-3583)]

❒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

번호	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면적(㎡)	면적(㎡)	소유자
1	거창읍 김천리	213-32	임	231	231	거창군
2	〃	216-5	대	15,578	15,578	거창군
3	〃	216-45	임	11	11	거창군
4	거창읍 장팔리	9-12	대	103	103	거창군
합 계				**15,923**	**15,923**	

거창군 고시 제2022-47호

거창군계획시설(교통시설:소로1-75, 76호선, 중로3-64호선)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(변경) 인가 고시

거창군 고시 제2020-122호(2020.11.06.) 등에 의거 결정된 군계획시설(교통시설: 소로1-75, 76호선, 중로3-64호선)에 대하여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86조, 제88조,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(변경) 인가 고시합니다.

2022년 04월 20일

거 창 군 수

1. 사업의 개요(세부계획만 변경)

종류	명 칭	위 치		시 행 규 모					시 행 구 간	최 초 결정일	사업기간
		읍	리	구분	류별	번호	연장 (m)	폭 (m)			
교통시설: 도로	군계획시설(소로 1-75호선)사업	거창	가지	소로	1	75	53	8.0~ 10.0	소로1-48 ~ 거창읍 가지리 1338-4	건고 제1967-382호 (1967.05.24)	실시계획인가일 ~ 2023.08.31
	군계획시설(소로 1-76호선)사업	거창	가지	소로	1	76	168	10.0	중로3-64 ~ 거창읍 가지리 1325-2	거창군 고시 제2020-122호 ('20.11.06.)	
	군계획시설(중로 3-64호선)사업	거창	가지	중로	3	64	86	12.0	거창읍 가지리 1333-6 ~ 거창읍 가지리 1336-11	거창군 고시 제2020-130호 ('20.11.26.)	

○ 세부계획 변경 : 도로 사면 면적 축소 A=245.0㎡, 순성토 운반 V=1648.0㎥, L형 옹벽 설치 L=131.1m, 보강토옹벽 설치 L=131.1m, 오수맨홀 6개 추가 설치 등

2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(변경 없음)

○ 성 명 : ㈜무궁화신탁

○ 주 소 :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, 22층(포스코 P&S타워)

3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(변경 없음)

○ 착수 예정일 : 2021. 6. 17.

○ 준공 예정일 : 2023. 8. 31.

4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·지번·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·권리자의 성명·주소(변경 없음)

번호	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 면적	편입 면적	소유자		소유권 이외의 권리		비고
						주소	소유자	권리명	권리자	
계	15필지				3,246					
1	거창읍 가지리	1336-15	답	240	240	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134,22층 (역삼동,포스코피앤에스타워)	㈜무궁화신탁			
2	"	1335-2	답	760	700	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134,22층 (역삼동,포스코피앤에스타워)	㈜무궁화신탁			
3	"	산101-7	임	110	3		거창군			
4	"	1338-5	답	50	47	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134,22층 (역삼동,포스코피앤에스타워)	㈜무궁화신탁			
5	"	1333-21	과	714	71		거창군			
6	"	1335-2	답	760	60	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134,22층 (역삼동,포스코피앤에스타워)	㈜무궁화신탁			
7	"	1336-13	답	370	370	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134,22층 (역삼동,포스코피앤에스타워)	㈜무궁화신탁			
8	"	산105-27	임	61	61	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134,22층 (역삼동,포스코피앤에스타워)	㈜무궁화신탁			
9	"	산105-26	임	1	1	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134,22층 (역삼동,포스코피앤에스타워)	㈜무궁화신탁			
10	"	산105-25	임	58	58	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134,22층 (역삼동,포스코피앤에스타워)	㈜무궁화신탁			
11	"	1325-5	답	1,167	1,167	서울특별시강남구테헤란로 134,22층 (역삼동,포스코피앤에스타워)	㈜무궁화신탁			
12	"	1333-21	과	714	136		거창군			
13	"	산101-7	임	110	92		거창군			
14	"	1333-23	과	69	53		거창군			
15	"	1333-22	과	230	187		거창군			

5. 관계도서는 거창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(☎055-940-3583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거창군 고시 제2022-49호

도로명주소 고시

「도로명주소법」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·변경·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2. 4. 20.

거 창 군 수

○ **도로명주소 고시대상**

- 건물번호 부여 :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몽석2길 39 등 7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고시일	도로명 부여 (변경·폐지)사유	비고
(별 도 열 람)				

○ **도로명주소 사용**

-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**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·변경·폐지 등**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·변경·폐지는 「도로명주소법 시행령」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「도로명주소법」 제8조 제2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**참고사항**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.
-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(☎055-940-3313)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거창군 공고 제2022-651호

「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」제정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2년 4월 18일

거창군수

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1. 제안이유

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및 어려운 용어 등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를 일괄개정하여 별도의 입법절차로 인한 비경제성·비능률성을 해소하고 법령 적합성 등을 신속하게 확보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일괄정비

1) 정부합동평가대상: 상위법령 등 개정사항 미반영(안 제1조·제2조)

가) 제명 개정사항 반영

(1)「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·운영에관한법률」⇒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

(2) 「거창군 직무대리규칙」⇒「거창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」

2) 자율정비대상: 용어 순화 및 문장 정비 등(안 제1조~제4조)

가) 어려운 용어 순화, 띄어쓰기

(1) 규정에 의한(의하여) ⇒ 에 따른(따라), 당해 ⇒ 해당

(2) 자 ⇒ 사람, 기타 ⇒ 그 밖에, 한 때 ⇒ 한 경우

(3) 각호 ⇒ 각 호

나) 법령 입안원칙에 맞게 정비

나. 일괄정비대상 규칙 4건

1) 거창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규칙

2) 거창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

3) 거창군민상조례 시행규칙

4) 거창군반운영규칙

3. 제정 규칙안: 붙임

4. 의견제출

가.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(기획예산담당관)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주소: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기획예산담당관

다. 우편번호: 51032, 전화/팩스 : 055-940-3073/3029

이메일: sun815@korea.kr

라. 제출사항

1)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2)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3) 그 밖의 참고사항 등

5. 입법예고문 게재: 거창군 홈페이지(http://www.geochang.go.kr)

[붙임]

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

의안 번호	2022-

제출연월일	2022. 4. .
제 출 자	기획예산담당관

1. 제안 이유

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및 어려운 용어 등 행정안전부 기획정비 과제를 일괄개정하여 별도의 입법절차로 인한 비경제성·비능률성을 해소하고 법령 적합성 등을 신속하게 확보하고자 함

2. 주요 내용

가.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일괄정비

1) 정부합동평가대상: 상위법령 등 개정사항 미반영(안 제1조·제2조)

가) 제명 개정사항 반영

(1)「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·운영에관한법률」⇒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

(2) 「거창군 직무대리규칙」⇒「거창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」

2) 자율정비대상: 용어 순화 및 문장 정비 등(안 제1조~제4조)

가) 어려운 용어 순화, 띄어쓰기

(1) 규정에 의한(의하여) ⇒ 에 따른(따라), 당해 ⇒ 해당

(2) 자 ⇒ 사람, 기타 ⇒ 그 밖에, 한 때 ⇒ 한 경우

(3) 각호 ⇒ 각 호

나) 법령 입안원칙에 맞게 정비

(1) 목적조항에는 약칭표현 올 수 없음에 따라 약칭표현 삭제

(2) 호에는 완전한 문장 원칙적으로 올 수 없음에 따라 단어나 어절 등의 형식으로 정비

(3) 조례 위임에 따른 위임규칙임을 명확히 함

(가) 거창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·운영에 관한 규칙

⇒ 거창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
(나) 거창군반운영규칙 ⇒ 거창군 반 설치조례 시행규칙

나. 일괄정비대상 규칙 4건

1) 거창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규칙

2) 거창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

3) 거창군민상조례 시행규칙

4) 거창군반운영규칙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29조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　　의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1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2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:

나) 예고결과:

3) 비용추계서: 해당사항 없음

4) 성별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거창군 규칙 제 호

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일괄정비를 위한 거창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

제1조(「거창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규칙」의 개정) 「거창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규칙」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거창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·운영에 관한 규칙”을 “거창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, 제3조제2항 중 “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제2항,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, 제4조 중 “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에 따라”로 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「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·운영에관한법률」”을 “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3조제4항 중 “하며,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 서립사실 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.”를 “한다.”로 한다.

제2조(「거창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」의 개정) 「거창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」 중 일부를 별표 2와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거창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조례」(이하 "조례"라 한다)”를 “「거창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조례」”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헌장”을 “거창군행정서비스헌장”(이하 “헌장”이라 한다)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“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조례 제4조에 의해”를 “「거창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조례」(이하 "조례"라 한다) 제4조에 따라”로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한다.
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때”를 “ 경우”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제12조제1항 중 “때”를 “ 경우”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“종합민원실장”을 “민원소토과장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“민원봉사과장”을 “민원소통과장”으로 “때”를 “ 경우”로 “의거”를 “따라”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“의거”를 “따라”로 “때”를 “ 경우”로 한다.
제13조제1항제6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15인이내”를 “15명 이내”로 “과반수이상”을 “과반수 이상”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“「거창군 직무대리규칙」”을 “「거창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」”으로 “자가”를 “사람이”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“자로”를 “사람으로”로 “자”를 “사람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“자”를 “사람”으로 한다.
제14조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“다음”을 “다음 각 호의”로 한다.

제3조(「거창군민상조례 시행규칙」의 개정) 「거창군민상조례 시행규칙」 중 일부를 별표 3과 같이 개정한다.
제1조 중 “「거창군민상조례」(이하 “조례” 라 한다)”를 “「거창군민상조례」”로 한다.
제2조 중 “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「거창군민상조례」(이하 “조례” 라 한다) 제6조제1항에 따른”으로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한다.
제3조 중 “군민상후보자”를 “거창군민상 후보자”로 한다.
제4조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“때는 군민상수상후보자”를 “때에는 거창군민상 수상후보자”로 “으로 하여금”을 “에게”로 “확인하여 군민상심사위원회”를 “확인하게 하고 거창군민상심사위원회”로 한다.
제5조 중 “군민상심사위원회는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거창군민상심사위원회는 조례 제7조에 따라”로 한다.
제6조 조 제목 “(기타사항)”을 “운영세칙”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“군민상심사위원회”를 “거창군민상심사위원회”로 한다

제4조(「거창군반운영규칙」의 개정) 「거창군반운영규칙」 중 일부를 별표 4와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거창군반운영규칙”을 “거창군 반 설치조례 시행규칙”으로 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거창군 반 설치조례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며 거주지 반내에 상주하고 반상회에서 반원총의를 거쳐 선출된 사람을 읍·면장이 위촉·해촉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다음 각 호”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“공지시항에 계도, 주지”를 “공지사항에 관한 홍보 및 지도”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“주민계도”를 “주민 지도”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“시혜”를 “혜택”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“지도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”을 “다음 각 호”로 “자로”를 “사람으로”로 “자를”을 “사람을”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“투철하고”를 “투철한 사람”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“높으며”을 “높은 사람”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“자”를 “사람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과”를 “다음 각 호와”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“여망”을 “건의”로 한다.

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역무”를 “업무”로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“공여”를 “제공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반상회의 임무 중 반내 주민 일반에게 주지 또는 공지시킬”을 “반내 주민에게 알려야 할”로 한다.

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 사항들”을 “다음 각 호의 사항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“사항 주지”를 “사항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“새소식사항 주지”를 “새소식사항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“여망”을 “건의”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 요령과 같이”를 “다음 각 호와 같이”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“분담시킨다.”를 “분담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“상금자에 분담시킨다.”를 “상금자에게 분담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“분담시킨다.”를 “분담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“이상의”를 “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”로 “분담케 한다.”를 “분담”으로 한다.

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여망”을 “건의”로 “다음에 의하여”를 “다음 각 호에 따라”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“조치한다.”를 “조치”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“타기관”을 “다른 기관”으로 “복명서의 접수로부터”를 “결과 보고서의 접수일”로 “보고한다.”를 “보고”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“장시일을 요하는”을 “오랜 기간이 필요한”으로 “통보한다.”를 “통보”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“별표 서식”을 “별지 서식”으로 한다.

제11조 조 제목 “(반상회에 부의할 행정적인 의제)”를 “(반상회에 부칠 행정적인 의제)”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“부의할”을 “부칠”로 “지참 설명한다.”를 “설명한다.”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“ 전 제7조의 각 호”를 “제7조 각 호”로 한다.

제12조 중 “1~2회”를 “연 1회 이상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련법령

□「지방자치법」

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8661호, 2021. 12. 28., 타법개정]

제29조(규칙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.

거창군 공고 제2022-673호

거창군 청소년수련시설 임시휴관 공고

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에 따른 감염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청소년수련시설 임시휴관을 공고합니다.

2022. 4. 20.

거 창 군 수

1. 휴관기간 : 2022. 4. 20.(수) 12시 ~ 2022. 4. 23.(토) 24시
2. 대상시설

시설(기관)명	위 치	문의처
거창군청소년문화의집	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4길 60	☎ 055-940-8830

3. 휴관내용 : 시설 휴관 및 프로그램 운영 잠정 중단
4. 안내방법
   가. 거창군 홈페이지 새소식 및 공고란 게재
   나. 거창군청소년문화의집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 게시
   다. 거창군청소년문화의집 휴관 안내문 부착 등